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50
----------	-----

제출년월일 : 2020. 0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와 국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평가(안 제5조 ~ 제7조)
- 라.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마. 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당초예산에 400백만원 반영 계획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4. 3. ~ 2020. 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실-3534, 2020. 3. 30.)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3534, 2020. 3. 30.)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21231, 2020. 4. 1.)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④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군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⑥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⑦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장, 복지과장, 산림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원예과장, 평창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교육평창네트워크 상임대표
4. 농업인 단체 추천인
5.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요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장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교류, 지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12조(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교류, 지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운영으로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2,412,000	
식생활교육문화체험장 구축 (국비)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체험장 구축비	400,000	2021년 당초예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 (국비)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비	2,000,000	2022년 당초예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운영비 (군비)	식생활교육문화센터 운영 (1,000천원*12개월)	12,000	2023년 당초예산

다. 재원조달 방안 : 2021년 ~ 2023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연락처	(033) 330 - 13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00,000	2,000,000	12,000	12,000	12,000	2,436,000
	식생활교육문화체험장 (국비)	400,000					400,000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건축(국비)		2,000,000				2,000,000
	식생활교육문화센터 운영비(군비)			12,000	12,000	12,000	3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80,000	1,000,000				1,280,000
	보조금	280,000	1,000,000				1,28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1,000,000	12,000	12,000	12,000	1,156,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120,000	1,000,000	12,000	12,000	12,000	1,156,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